


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
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



수 신 전 회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
참 조 시설관리 담당

제 목 「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도입」 관련
개선(안)에 대한 건의의견 제출 요청 **[긴급]**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행정안전부로부터 환경부에 의견 조회된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개선(안)과 관련하여 동 개선(안)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'20.10.20(화)까지 제출(FAX : 02-718-7171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개선(안) 中 지정폐기물 보관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열화상카메라 설치하는 보관시설이 없는 매립시설 설치·운영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, 환경부에서는 매립시설 내 열화상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 제출 예정

붙 임 : 1. 「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도입」 관련 개선(안) 1부.
2.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. 끝.
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



담 당 김성찬 대외협력팀장 오은석 상 무 장기석 부회장 김상배 회 장 이민석

협 조

시 행 한매협 2020 - 58호 (2020. 10. 19) 접수

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iwl.a.or.kr

전 화 02-718-7900 전 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261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도입

◆ 강원도 흥천 폐기물처리시설 화재('19.12.26)로 1명 부상
- 경향신문 이재경 기자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폐기물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
- (문제점) 영상정보처리기기만으로는 현장점검 시 정확한 화재 안전성 확보 어려움

□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

- (개선방향) 열화상카메라 도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
- (기대효과) 저장 및 이송배관 등 현장점검 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화재사고 사전예방 실현

현행	개선안	법규명
▶ 지정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	▶ 지정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하여 현장점검 시 활용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<제635호, 2016.5.25.> 개정

□ 관련 조문
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, [별표11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

현행	개선안
1. 공통기준 파.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매립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	1. 공통기준 파. <u>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매립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와 열화상카메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와 열화상카메라를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</u>

붙임 2

**「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도입」에
대한 건의의견**

개선(안)	수정 건의(안)	사 유

2020. 10. .

업 체 명 :

담 당 자 :

연 락 처 :
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귀중